

-
- 문서번호 : 2024_KILA_회원서비스팀_07호 [직인생략] [관련부서회람]
 - 시행일자 : 2024. 3. 21
 - 수 신 : 대표이사
 - 참 조 : 인사/총무팀장, 기획팀장, 물류팀장
 - 제 목 : **한국통합물류협회 회원가입 안내**
-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협회는 2009년 6월 **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의거해** 설립된 대한민국 물류분야의 대표기관으로서, 물류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3. 물류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해 대정부 자문 및 건의활동으로 민관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각종 물류 이슈에 대응하고 있으며, 회원사 임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 컨소시엄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4. 이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최신 물류정보를 접해 보시고 다양한 회원 활동을 통해 귀사의 물류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붙 임 : 1. 회원가입 안내 1부.
2. 회원가입신청서 1부. 끝.

한국통합물류협회장

■ 회원자격

- 정 회원 : 제조업, 유통업, 물류업, 수출입업과 이와 관련서비스업 등 물류산업과 관련이 있거나,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영리·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
- 특별회원 : 물류산업과 관련이 있거나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비영리법인(지방자치단체 등), 단체, 교수, 연구원, 물류관리사 등 물류관련 전문인력, 해외교포 물류인에 해당되는 자

■ 가입절차

① 가입서류 제출

- 가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회사 카탈로그 각 1부 우편(팩스 또는 이메일)송부

② 회비 납부

- 협회 계좌로 회비 납부(법인 계좌번호 등은 개별 통보)

③ 가입승인 및 서비스

- 회원가입 승인 통보 및 회원 서비스 안내

■ 가입안내

(우 03162)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, 405호(인사동, 태화빌딩) 한국통합물류협회
 회원서비스팀 유진수 대리 전화 : (02)6954-6631(직통), (02)786-6112(대표)
 팩스 : (02)712-0611 이메일 rjs0508@koila.or.kr

■ 회원서비스

정책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건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종별 위원회를 통한 관련 법률 및 규제개선 등 정책건의 • 물류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회원사 애로사항 수렴 및 관련 부처 건의
최신 물류 정보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‘주간물류동향’ 소식지 제공(주1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류 정보 및 물류 정책 제안 진행 상황 - 신규 물류정책, 업계 현안 사항, 협회 활동사항 등

비즈니스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합물류, 택배, 컨테이너운송, 스마트물류 등 전문위원회 활동에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도개선,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대정부 건의 • 필요시 전문분야별 모임 구성 후 정책현안 대응에 참여
물류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자 정부지원(80~100%) 교육(고용노동부 지원 교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라스트마일,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, 이커머스 등 20개 전문 물류과정 • 물류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수강료 할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류전문컨설턴트양성과정, 물류자동화사내도입 및 ROI분석 실습과정, 조찬세미나 우선초청, 우수 물류현장 연수 등
정부포상 추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물류대상 유공자 추천 및 서류작성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류산업발전(훈·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·국토교통부장관 표창) (연1회) • 기타 물류부문 정부포상 유공자 추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역의 날 물류부문 등 각종 정부포상시 유공자 추천
경비절감 지원사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류창고의 보험료를 경감하기 위한 재난배상 책임보험(의무보험)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, 재산종합보험 가입시 단체보험적용(보험료 10~20% 할인) • 택배차량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비교견적을 통한 가입 지원
물류 전시회 참가비 할인 및 상담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제물류산업대전 참가비 할인(15%) • 물류서비스 설명회 무료참가 및 발표 혜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원사의 물류장비 및 서비스 홍보 기회 제공 • 국내·외 화주기업과의 1:1비즈니스 상담회 참석 기회 제공
협회 주최 프로그램 참가 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채용박람회, 특별세미나, 해외물류연수 등의 협회 주최 행사 우선 초청, 특별초청 및 참가비 할인

■ 회비 안내

단위 : 천원

구 분		입회비	연회비	비 고
정회원	매출액 300억원 이상 법인	5,000	5,000	기업, 영리 법인 등
	매출액 50억원 이상 ~ 300억 미만 법인	2,000	2,000	
	매출액 50억원 미만 법인	500	500	
특별회원	단체 및 비영리법인(지방자치단체 등)	2,000	2,000	공기업, 비영리 단체 등

* 매출액은 회비 부과일 전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산정

* 최초 가입시에는 입회비만 납부하며, 가입 다음 연도부터 연회비 납부

회원가입신청서

회원구분

정회원

특별회원

※회원번호		업종분류	<input type="checkbox"/> 물류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법인명 (단체명)	한 글			영 문	
	주 소	한글	()		
		영문	()		
	사업자 등록번호			법 인 등록번호	
홈페이지	http://				
대표자	한 글			영 문	
회사 개요	자본금	억 원	연간매출액	억 원	
	고용인원	명	설립일자	년 월 일	
	해외진출국			보유면허	
	운영창고	자가창고 : 개	m ²	자가차량	대
		임대창고 : 개	m ²	(화물자동차)	
주요사업분야					
대표이사	부서/직위 :			성 명 :	
	TEL :			FAX :	
	Mobile :			E-Mail :	
담당부서 책임자	부서/직위 :			성 명 :	
	TEL :			FAX :	
	Mobile :			E-Mail :	
담당부서 실무자	부서/직위 :			성 명 :	
	TEL :			FAX :	
	Mobile :			E-Mail :	
<p>한국통합물류협회 정관 제7조(회원의 가입)의 규정에 의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며,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 인 명 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 표 자 : (직인 또는 서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통합물류협회 귀중</p>					
<p>※첨부서류 :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. 회사소개서 (홍보용 카달로그 등) 1부 3. 회사CI 원본 파일</p> <p>* 회원가입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우편, 이메일 또는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* 입회비를 납부하시면(금액 및 계좌번호는 개별 통보)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.</p> <p>* 문의 : 회원서비스팀 (TEL:02-6954-6631 / FAX:02-712-0611 / rjs0508@koila.or.kr)</p>					

협회 정관중 회원의 권리·의무사항

< 협회 정관(제2장 회원) >

□ 제7조(회원의 가입)

- ①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제8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본 협회가 주관하는 주요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 다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의 행사는 정회원에 한한다.

□ 제9조(권리행사 제한)

정회원으로 총회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2회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,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체회비의 완납시까지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.

□ 제10조(회원의 의무)

- ① 회원은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은 이 정관 및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은 협회가 그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물류관련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□ 제11조(회원의 자격상실)

-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.
 1.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 2. 협회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때
 3.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 4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

□ 제12조(포상)

- ①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, 타인의 모범이 되거나 귀감이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협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거나 본 협회의 발전과 명예선양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